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15 발의연월일: 2021. 5. 14.

발 의 자:이수진비・강민정・박 정

송옥주 • 안호영 • 김수흥

양이원영 • 윤미향 • 박홍근

윤준병 • 이규민 • 강병원

김민철 • 박영순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

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, 가뭄 등 수재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, 2020년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주변에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여 하천관리 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.

그런데 현행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체계가 미흡한 상황이어서,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을 사전적으로 대처하고,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하천의 자연성 보전·회복 및 하천환경 조성에 있어 탄소흡수원 확충 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및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을 추가하고, 하천

공사 및 유지·보수 시행자에게 하천의 자연성 보전·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고려하도록 하며, 하천환경 등의 보전·복원사업에 있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하천공사의 정의에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하천의 신설・증설
 ・개량 및 보수 등 외에 하천의 자연성을 보전・회복하기 위한 신설・증설・개량・보수 및 복원하는 공사를 포함하도록 함(안 제2조제5호).
- 나. 국가의 책무로서의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·관리를 위한 것임을 규정함(안 제3조제1항).
- 다. 하천기본계획에 하천의 이용과 자연친화적인 관리 및 보전 외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25조제 1항).
- 라. 하천공사 및 유지·보수 시행 시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 외에 시행자에게 하천의 자연성 보전·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고려하도록 함(안 제43조제1항).
- 마.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지정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내에서의 보전 또는 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

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에 대한 확충방안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45조제2 항). 법률 제 호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"높이기"를 "높이거나 자연성을 보전·회복하기"로, "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"을 "개량·보수 및 복원하는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하천에 대한 효율적인"을 "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, 자연친화적인 하천의"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"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"를 "하천 관리청은"으로, "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·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"을 "이용과 자연친화적 관리 및 보전,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"으로, "하는 10년"을 "하여 10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 항 전단 중 "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"을 "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"으로 한다.

제43조의 제목 중 "공법의 사용"을 "하천공사 시행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2항"으로 한다.

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하천공사 및 유지·보수를 시행하는 자는 하천의 자연성 보전·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를 고려하여 야 한다.

② 제1항의 하천공사 및 유지·보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 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.

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「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의 탄소흡수원에 대한 확충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~ 4. (생 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"하천공사"라 함은 하천의 기 5. -----능을 <u>높이기</u> 위하여 하천의 신 -- <u>높이거나 자연성을 보전ㆍ</u> 설·증설·개량 및 보수 등을 회복하기 --------- 개량·보수 및 복원하는 하는 공사를 말한다. 6. ~ 8. (생략) 6. ~ 8. (현행과 같음)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|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-----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·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 고.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-----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. ②·③ (생 략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25조(하천기본계획) ① 하천관 제25조(하천기본계획) ① 하천관 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리청은 ---------- 이용과 자연친화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 전 관리 및 보전, 기후변화에 따 화적 관리·보전에 필요한 기본 | 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------ <u>하여 10년</u> -----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 |

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수자원의 조사・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<u>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</u>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・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~ ⑧ (생 략)

제43조(자연친화적인 <u>공법의 사용</u> 등) ① 하천관리청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 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. <신 설>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

	②
	<u>하천유역수자원관리</u>
	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
	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
	·
	<u>.</u>
	· ③ ~ ⑧ (현행과 같음)
저	43조(자연친화적인 하천공사 시
	<u>행</u> 등) ① 제27조부터 제30조까
	지의 하천공사 및 유지 · 보수를
	시행하는 자는 하천의 자연성
	보전 · 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
	생태를 고려하여야 한다.
	② 제1항의 하천공사 및 유지・
	보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
	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
	_
	<u>다.</u> ③ 제2항-
	<u>/۱ 2 8</u>

여 필요한 기법을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・ 보급하여야 한다.

략)

<신 설>

제45조(보전지구 등의 관리) (생 제45조(보전지구 등의 관리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 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「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| 제2조제10호의 탄 소흡수원에 대한 확충방안을 포 함하여여야 한다.